충청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충청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4년 6월 2일 김형근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6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O 충청북도 경관 조성 시 성별 수요조사를 통해 성별 특성, 성별 편익 차이 등을 고려하도록 함.

3. 주요내용

○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성별 수혜자 수요조사를 포함 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: 제4조제5호(안)

4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성별 수혜자 수요조사를 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양성평등원칙의 준 수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